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

지방소득세(법인세분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1. 납 세 자 : *****
2. 부과취소사유 : 타시군 과오납(수원시 영통구 세무과-23484/2015.10.14.)
3. 건수 및 세액

(단위 : 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4건	94,204,820	30,387,850	63,816,970

- 붙임 1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결의결정서 1부.
 2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부과취소내역서 1부.
 3. 부과취소 관련서류 1부. 끝.

주무관 **최세영** 지방소득세4팀 **최종권** 세무2과장 **김광수** 기획경제국장 전결 10/21
김용운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36212 () 접수 ()
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 전화 02-3423-5745 /전송 02-3423-8895 / young3043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6)